

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03. 16(수) 우강호의원외 6
- 나. 회부일자 : 2005. 3. 2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3. 23(수)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3.23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우강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창군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,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,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·수·축산물 사용을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학교급식지원의 기본원칙 규정.(안 제3조)
- 학교급식의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신청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.(안 제4조 내지 제6조)
- 학교급식대상자 선정, 지원규모, 지원방법 등을 심의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7조)
- 지원대상자의 지원교부결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, 지원금의 정산,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8조 내지 제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제119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이유를 수용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마련 조례안입니다.
-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"학교급식의 질 향상 문제"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며,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